

독일판례 3

정정보도문에 몇 가지의 부적법한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게재를 명한 사례

스투트가르트고등법원

1986. 7. 23 판결-4U124/86 사건-

적용법조

Baden-Wurtemberg 주 언론법 제 11 조

판결요지

1. 반박문을 게재하는 편집자측에서 「이 사건 반박문의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지 또는 그것이 임의로 날조된 것인지의 여부와는 무관하게, 위 반박문을 게재하지 않을 수 없다」라고 하는 편집자주의 기재내용에 대하여는 다시 정정보도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다

2. 피해자가 그의 반박문을 작성함에 있어서, 그 내용을 세분하여 작성함으로써, 「다툼이 없는 부분들」이 즉시 게재될 수 있는 경우에는, 위 여러 가지로 세분된 15개 항목의 사항 중 3개의 사항이, 언론법이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그 게재를 거부할 수 없는 것이다.

판결이유

1. 피고들이 반박문의 말미에 이어서, 피고들은 언론법의 규정상 「반박문의 기재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및 그 내용이 임의로 날조된 것인지의 여부에 불문하고, 반박문을 게재하지 않을 수 없다」고 하는 편집자주를 기재한 경우에, 위 기재에 대하여 원고는 다시 정정보도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다. 언론법 제 11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면, 정정보도의 청구는 단지사실적 주장에 대하여만 이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. 그리고, 어느 범위에서 정정 보도문을 게재하여야 하는가는 법률적인 문제로서 이에 대하여는 어떠한 증거도 필요하지 않은 것이고, 또한 하등의 사실적 주장도 아닌 것이다. 그리고 문제로 된 구절이, 앞서 게재된 반박문이 임의로 날조된 것이라는 주장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라고, 원고 스스로가 진술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(당원의 견해도 역시 위와 같이 이해된다), 이 점에 관한 항소는 이유 없다.

2. 이에 반하여, 원심법원의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판결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정당하다. 이 사건에 있어서의 원고가 1986년 3월 5일자 편지에 의하여 주장한 바와 같이, 피해자가 그의 게재를 원하는 반박문을 작성함에 있어서 항목을 세분하여, 「다툼없는 부분」이 지체없이 게재될 수 있는 경우에는, 그 반박문을 게재할 의무가 있는 자는, 위 15개의 항목 중 3개의 항목이 언론법상 허용되는 범위를 초과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로, 그 반박문 전체의 게재를 거부할 수는 없는 것이다. 오히려, 반박문을 게재할 의무가 있는 자는 위 다툼이 없는 부분을 우선 게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판결이 내려진 후에 추가로 그 나머지의 부분들을 게재하여야 하는 것이다(Seitz/Schmidt/schoner, Gegen-darstellungsanspruch in Presse, Funk und Fernsehen, 1980, Rdnr. 163/2 및 OLG Frankfurt, NJWPR 86, 606, 608 판결 참조). 위와 같은 점들을 고려 한다면, 피고들은 1986년 3월 11일 위 정정보도문 전부의 게재를 거부함으로써 게재가 요청된 정정보도문의 2항 내지 9항 및 11항 내지 14항에 관하여 원고가 소를 제기하도록 야기하였던 것이다. 위와 같은 사정들은, 독일민사소송법 제 9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, 위 법 제 92조에 따라 1심 소송절차의 소송 총비용을 결정함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. 다른 한편에 있어서, 원고는 정정보도문의 제 1항에 관하여는 독일민사소송법제 91조에 따라서, 또한 원래의 번호 제 10항 및 제 15항에 관하여는 위 법 제 269조 제 3항에 따라서, 그리고 새로운 번호 제 10항 및 제 15항에 관하여는 위 법 제 93조의 규정의 흠결로 말미암아 위 법 제 91조의 규정에 따라서, 소송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제 1심 절차의 소송비용은 1 대 2의 비율로 피고들이 이를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.